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시 관계기관의 역할 및 개선방안

임택수*, 박상우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Taek-Su Im*, Sangwoo Park

Marine Pollution Strike Division, Korea Coast Guard

해양환경관리법에 방제조치 의무는 유출 행위자에게 있지만, 응급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경비함정이나 항공기를 동원하여 오염상태를 파악하고, 해상에 부유하는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회수작업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대형유출사고의 경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하여 방제작업을 총괄하는데 이번 사고에서 관계기관의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양경찰청 :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상과 해안방제를 총괄 지휘·통제
- 지방자치단체 : 인력, 장비 동원 관할 오염해안 방제 수행
- (구)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고 수습 및 대응
-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보호와 폐기물 처리 지원
- 국방부 및 지역 책임부대 : 인력과 장비 지원
- (구)보건복지부 및 지방노동관서 : 방제작업자의 건강, 안전관리 지원
- 경찰청 : 사고지역 인근의 교통질서 및 치안유지 담당
- 한국해양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 태안해안국립공원 : 원활한 방제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지원, 피해조사 및 보상지원, 환경복원지원 등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기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문제점들을 밝혀, 향후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적 오염사고 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해양환경관리법, 방제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